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3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4.

발 의 자:이종성·김승수·김영식

김예지 · 김용판 · 홍석준

정경희 · 허은아 · 백종헌

정희용 • 박수영 • 박대수

전주혜 • 윤주경 • 김상훈

임이자 · 김미애 · 안병길

박 진 • 이달곤 • 황보승희

윤두현 · 강기윤 · 박대출

권명호 · 신원식 · 유상범

강대식 • 양금희 • 최춘식

하영제 · 이만희 · 한기호

의원(33인)

제안이유

최근 저출산·고령화 사회의 도래,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서비스 공급기 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,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,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,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사회서비스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,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함(안 제5조).
- 라.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, 사회서비스원의 정관, 임원의 임면,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질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,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함(안 제1 7조 및 제18조).

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사회서비스"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.
 - 2. "사회서비스 제공기관"이란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4 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3. "사회서비스 종사자"란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 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 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관리·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 - ②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5조(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발전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사회서비스 발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 - 3.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계획
 - 4.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

- 5.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
- 6.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
- 7.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-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장 사회서비스원

- 제6조(사회서비스원의 설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원(이하 "사회서비스원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 한다.
 - ②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

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- ④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정관) 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사무소의 소재지
 - 4. 사업에 관한 사항
 -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- 6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- 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사회서비스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사업)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·개발
- 2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
- 3.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
-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

서비스 제공

- 5.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·회계·노무 등에 관한 상담 및 자문
- 6.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임원) ① 사회서비스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-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- 제10조(임원의 임면) ① 사회서비스원의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는 사회 서비스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전문가 각 3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③ 이사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과 감사가 연임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④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
- 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- 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
- 1.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
- 2.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
- 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)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. 이 경우 임 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 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제12조(직원의 채용) ①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

- 력·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(이하 "경력경쟁시험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.
- ③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·신체조건·용모 ·학력·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(회계)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4조(예산 및 결산) ① 사회서비스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 야 하며, 사회서비스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사회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 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, 회계감사를 받은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과 결산은 공시하여야 한다. 제15조(보조금) 국가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- 제16조(재원) 사회서비스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 - 1. 정부 출연금
 - 2.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, 교부금 등 그 밖의 재원
 - 3.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
 - 4. 자산의 관리, 운용으로 인한 수입
 - 5. 그 밖의 보조금, 융자금 또는 차입금

제3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

- 제17조(경영실적의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강화,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・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

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18조(운영지침의 통보 등)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에 적용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(이하 "표준운영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할 수 있다.
 - 1. 조직 운영과 정원 ·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- 제19조(지도·감독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·운 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, 조사 또는 질문 을 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수 있다.
- 제20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21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4장 벌칙

- 제22조(과태료)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·질문·검사를 기피·거부·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